

# 글로벌리제이션 밑에서 동요하는 국민국가

## — 『동화』와 배제의 교육구조—

이치모리 마코토 ICHIMORI Makoto

(준교수·발달과학강좌 [ichimori@rstu.jp](mailto:ichimori@rstu.jp))

키워드 : 글로벌리제이션, 국민국가, '동화', 배제, 교육기본법, '재일한국인', 교원양성

### 들어가며

본고는 2009년 10월 ~ 2010년 1월에 걸쳐 한국의 대학에서 3개의 강연, 강의 내용을 통합한 것에 의해 현대일본교육 과정의 일부분을 명확히 하려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 '국민국가'의 동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여기서 배제되고 있는 '민족교육'의 실태, 더욱이 문부과학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원 질의 보증'의 본질, 즉 '실천력'의 강화·배제의 구조 그리고 교원의 연수제도개혁이 교원양성에 관련하는 대학의 자세까지 파고드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

또한, 본고의 각 장은 보고·강의 때의 내용의 요점과 레주메를 다소 수정해 개제하기로 했다. 이는 본고의 집필의뢰가 당초 한국에서의 강연·강의의 기록 개제였으나, 3개를 나열하는 것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편집 책임의 와타나베 선생님으로부터도 자유논문으로서 개제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에 입각하여 일부러 이러한 형식으로 하였다. 독자에게 불친절하고 대만한 논고가 된 점은 양해를 구하고 싶다.

## 제 1장 현대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배제—계속되는 '동화' 주의—

본 장은 2006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내셔널리즘론의 특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주지는 결론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대로 이하의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교육기본법' 개정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국민국가의 동요를 보강하는 제편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기개', '천황 경외'의 생각이 아닌, 근대의 산물인 '전통'·'문화'를 들어내는 내셔널리즘론이다.
- ② 다른 한편으로, 戰後 민주주의의 미국적인 문명론과 戰前부터의 독일적 문화의 모순되는 병존이 이번 '교육기본법'에서는 없어지고 '국민문화'론으로 정합성이 취해져 있다. 이 것은 헌법과 모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2007년 11월 3일,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에서 강연내용을 다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통'·'문화'론과 '보편성'의 문제가 가진 의미를 더욱 파고들어 독자적 원고로 하려 한다.)

### I. 교육기본법개정

#### 1. 개정내용

배경: 국제경쟁과 글로벌화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  
21세기의 국제전략 : 법개정·개정교육·기본법·재정개혁·국가안전보장개혁

(집단적 자위권 확립)

#### 2조 (교육목적) 5항: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길러온 우리가 나라와 고향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나라를 존중하여,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학교교육법(21조 3호)에도 규정

학습지도요령: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에 충실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아이덴티티를 기르는 것.

문제점:

① 태도주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자유를 박탈

② '일본'이라는 국명이 어떤 역사를 배경에 두고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채, '일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의 강조  
특징: 일본의 전통·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구하고 이를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기르는 점에 있음. '나라를 지키는 기개', '천황 경외의 마음'은 후퇴하고 있다.

⇒ '전통'이나 '문화'를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통합장치로써 기능부전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과 소비문화에 의한 침식의 위기감.

## 2. '국민' 의 반응

6할 이상의 국민이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약 반수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아사히 신문』 「애국심여론조사」 2007년 1월 25일)

⇒제3세계의 폭력·독재·저항과는 달리, '일본' 은 건전한 내셔널리즘의 나라 또는 내셔널리즘에는 흥미가 없다는 일상감각.

⇒아시아의 반일 내셔널리즘이 이해 불가. (전후 책임의 결여)

### II. 내셔널리즘

지역 커뮤니티와 종교적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패트리아' 라는 단어가 14세기에 왕조를 교황권(종교)에서의 자립을 지칭하는 개념인 '내이션' 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패트리아티즘(애국심)으로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영어의 '내셔널리즘' 이라는 개념은 1836년의 사용이 최초.

내셔널리즘은 근대국민국가의 산물이기 때문에 연구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특히 본격화된 것은 최근 30년.

'글로벌리제이션화에 내셔널리즘이라는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 1. 만들어진 전통

에릭 홉스봄

#### 2. '국민' 의 상상

내이션(국민)= '국민이란 이미지로서 마음속에 그려진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익명의 존재동사의 공동성

국적과 내셔널·아이덴티티에 의해 성립

- ①공간의 국민화           균질화, 평준화된 밝고 청결한 공간  
                                  중앙-지방-해외(식민지), 풍경
- ②시간의 국민화           曆(시간의 재편), 노동·생활, 리듬, 신화/역사
- ③풍습의 국민화           복장, 인사, 의식, 새로운 전통
- ④신체의 국민화           5감, 보행, 앉는 방법, 학교·군대·공장에의 적응
- ⑤언어와 사고의 국민화   '표준어', '국어', 애국심

(니시카와 나가오의 그림을 수정한 것)

#### 3. 일본인은 언제 '일본인' = '국민' 이 되었는가

1873년 징병령: 병역 회피의 계속됨 ⇒ 대상자의 8~9할이 면제.

'천황폐하만세!'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 발표경부터.

국가행사와 학교의 식전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 어진, 만세의 4개 세트

청일·러일전쟁 기운에 의한 일체감

공교육: 교과서 속의 '표준어', 1910년대 남자 약 9할의 취학.

### III. '문명' 과 '문화'

#### 1. '문명' 과 '문화(국민문화)' 는 근대국가의 이데올로기

'문명', '문화' 개념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성립과 세트로 나왔다. 근대이데올로기 둘은 영역, 단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민족 대립을 배경으로 한 대립개념.

문명: 보편성의 강조 ⇒ 식민지주의의 정당화 개념으로.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선진국 국가 이데올로기.

문화: 특성을 강조. 배타성 ⇒ 배타성, 인종주의. 문명의 물질성에 대한 정신성, 문명의 보편성에 대한 개별성의 강조.

문화개념의 궁극적 발전은 나치즘.

19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후진국의 반동 이데올로기.

#### 2. 일본근대사에 있어서의 '문명' 과 '문화' 이데올로기

국민국가의 형성 제1단계 '메이지' 초기 문명(civilization)화.

제2단계 '다이쇼' 기 문화(kultur)의 유행 =후발근대 국가를 모델로한 유럽화.

#### 3. 전후의 일본

미국적 문명개념과 독일적 문화개념의 혼합.

구' 교육기본법' 에서는 민주주의의 '보편성' 을 중시.

'문화국가' 건설의 유행: 전쟁에 대한 반성의 결여. 독일적 문화개념의 존속정리.

자기와 자신의 국적을 밝히는 '문화' 와 동일화 시키려 하는 행동.

국가와 연결한 문화를 점검할 필요성. 문화는 무반성에 국명과 연결되어있다.

국민국가의 허구= '국민'의 환상, '전통'과 '문화'의 허구성.

개인과 국적, '국민', '민족', '인종', '문화'와의 거리감

'문명' ⇒ 문화 ⇒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강제적인 '동화주의'에 저항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언어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국민통합 또는 사회적 통합 이데올로기.

다수와 소수의 양자를 본질화하는 위험성을 가짐. 또는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음. 혹은<제국>의 혼합된 상황을 통제하는 뼈 놓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끝맺음**

① '교육기본법' 개정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국민국가의 동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기개', '천황 경의'가 아닌, 근대의 산물인 '전통'·'문화'를 내세우는 내셔널리즘론이다.

②다른 한편으로, 전후 민주주의의 미국적인 문명론과 전전부터의 독일적 문화의 모순되는 병존이 이번 '교육기본법'에서는 없어지고 ('국민')문화론으로서 정합성이 취해졌다. 이것은 헌법과 모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2장 '재일코리안'의 인권과 교육문제 — '민족교육'의 역사와 현재를 중심으로 —**

전후 일본의 '민주교육'에 있어서 그 존재는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채 존속되어 오고 있다. 본장에서는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아이누민족 '뉴커머'를 시작으로 일본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 여기서는 우선 '재일코리안'에 한정하기로 했다. 단, '재일'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하는가, 더욱이 다수의 '재일코리안'이 공립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보아도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재일코리안'의 교육도 극히 일부를 들여다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스스로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고집하는 교육의 장을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제1장에서 확인한 '문화' 및 '전통'의 '동화'를 전제로 하는 일본사회의 교육이 아직도 배워야할 점이 많은 문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내용은 이월순 '재일조선의 민족교육과 재일조선인교육'(박종오 편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과 재일조선인교육』 아카시서점, 2006년)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향, 특히 재일코리안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 '민족학교'의 실정을 덧붙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작업을 통해, 본 장에서는 전후 '민족교육', '민족학교'의 존재가 일본의 교육에 제시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하 5가지로 정리했다. ① 공무원의 민족성의 노정. ②국민국가의 재고를 촉구. ③전후 민주주의 내실의 노정. ④단일민족 환상에 기초한 동화주의를 노정시킨 점. ⑤인권으로서의 민족교육권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이 장은 2009년 10월 29일, 춘천 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소의 연구회에서의 강연내용이다. 이 테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계 '민족학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일'의 교육론에서 지금까지 거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1조교로서 존속해오고 있는 건국학원의 1970년대 중반까지의 독자노선, 그 귀 한국정부, 운동단체와의 관계 속에서의 뒤얽힘, '민족학교'에서 재외한국인학교에의 이행의 모순구조를 명확히 하려 한다.)

**I. '재일코리안'이란?**

1. '재일코리안'이란?

1945년 이전의 일본인 = 혼합민족설 ⇒ 戰後 '단일민족신화'의 성립.

'재일코리안' 문제 : ①식민지정책의 산물, ② 전후민주주의체제'의 산물

⇒ 표' 재일조선인의인구' 참조 = 만들어진 언설

매년 1만 명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귀화'

2. '민족교육'이란?

공교육 = '세속교육' '보편적가치' = '프랑스·이데올로기' (발리바)

'국민'의 창조

'大和(아마토)계 일본인'의 민족교육=무색투명한 국민환상⇒ '전통·문화'론

3. 대상의 한정 : 8할 이상의 '재일코리안'은 일본의 공교육에 진학하고 있다.

4. '국적취득'에의 동요

5. 지방 참정권 : 민주당 선거 공약으로부터의 삭제, 민주신당 반대표명

**II. '재일' 교육의 역사**

1. 식민지정책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교육정책

1920년대: 의무교육대상 밖의 '외지인자제'로서 방치

1930년대: 취학의무교육을 규정. ⇒ 1930년대 전후의 취학률은 70%. 많게는 야간소학교에 재적.

1939년: 강제연행의 개시와 동시에 중앙협화회에 의한 '동화' 정책 전개

'협력교육' = 조선인으로써의 의식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참가를 이끄는 교육.

1941년: 창씨개명

당시에는 민족교육활동(조선어, 조선역사)을 금지. 치안유지법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 2. 조선학교의 역사

1946년: 조선인학교 건설개시: 10월의 시점에서 초등 525 개교(아동수 42,182명, 교사수 1,012명), 중학 4 개교(1,180명, 52명), 청년학교 10 개교(714명, 54명)

1948년: GHQ의 의향에 따라 문부성은 재일 조선인을 일본 국적을 유지하는자로 규정 해(외국인으로서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지하는 반면), 일본학교에의 취학의무를 이유로 민족학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세움.

⇒ 각 현에서 조선학교폐쇄명령

⇒ 각지에서 항의행동 (ex. 신교육투쟁)

1949년: 정부는 조선학교운영 모체인 재일조선인 연맹에게 해산명령, 조선학교의 폐쇄 실시

3. 존속의 형태: ① 무허가의 자주학교로서의 존속

② 도립 조선학교로서의 이관(1955년 폐지)

③ 공립분교로서의 존속

④ '민족학급'의 설립

⑤ 허가 신청을 하여 일본의 학교법 일조교로서 정식으로 존속 (백두학원)

## 4. 운영모체의 재건과 부정

1951년: 재일 조선 통일 민주전선 (민전) 결성

1955년: 민전에서 변해 재일조선총연합회 결성

민교건설, 교과서·교원의 정비, 학교허가의 취득을 목표로 함. 하지만, 학교교육법 1 조교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학교로의 허가를 목표로 함.

## 5. 학교의 재건

1953년: 교토조선학원 설치인가

1956년: 조선대학교를 2년제로 설립 (1959년 4년제 병설).

목적: 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② 독자적인 교원양성

1965년: 한일조약 결성을 바탕으로 권리로서의 의무교육무상(無償)이 확인됨

⇒ 일본인과 같은 취급 = 특별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① 공립분교·'민족학급'의 폐지

② 조선학교는 1 조교로 인정하지 않음(민족교육의 부정)

1968년: 조선대학교, 각종학교로서 인가.

2007년: 대학교 1, 고급학교 11, 중급학교 39, 초급학교 60, 유치반 63

## 2009 년 현재

지역	대학교	고급학교	중급학교	초급학교	유치부	학원
홋카이도, 도호쿠지역		2	3	3		3
간토지역	1	3	12	16	1	20
호쿠리쿠, 신에쓰 지역			3	3		3
도우카이지역		1	5	7		8
긴키지역		3	8	21		26
주고쿠, 시코쿠 지역		1	6	6		6
규지역		1	1	3	1	5
합계	1	11	38	59	1	71(유치반 포함)

### III. 조선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목적: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하는 것’

‘민주주의적인 민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어인 조선어를 공부하는것, 독립국가 공민으로서의 민족적인 자각과 긍지를 가지는 것, 자신의 조국과 조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일본 교육제도에 준거: 1970년 후반부터 귀국을 전제로 한 교육내용에서 정주(定住)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교육과정변경.

1993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면적인 개변(改變)

특징: ①일본어수업 이외의 수업 전부를 조선어로 실시. 모어인 일본어와 모국어인 조선어의 바이링걸 교육. 회화의 중시

②재일의 역사도 교육

③남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의 내용. 통일을 의식한 새로운 경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한 교과서의 검문 있음)

※ ‘사회’ 는 일본의 역사지리, 공민. ‘역사지리’ 는 조선사, 조선지리

# <표 1> 초중급부의 과목별 수업시수

2005년도 현재

	초급부			중급부			수업 시수 합계	%			
	1	2	3	4	5	6			1	2	3
국어	9	8	7	7	6	6	5	5	6	2056	24.1
	306	280	245	245	210	210	175	175	210		
일본어	4	4	4	4	4	4	4	4	4	1256	14.7
	136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영어	-	-	-	-	-	-	4	4	4	420	4.9
	-	-	-	-	-	-	140	140	140		
사회	-	-	1	2	2	2	2	2		455	9.4
	-	-	35	70	70	70	70	70	70		
지리 역사	-	-	-	-	2	2	2	2	2	350	
	-	-	-	-	70	70	70	70	70		
산수 수학	4	5	5	5	5	5	4	4	4	1431	16.7
	136	175	175	175	175	175	140	140	140		
이과	-	-	3	3	3	3	4	4	3	805	9.4
	-	-	105	105	105	105	140	140	105		
음악 미술	4	4	4	4	4	4	2	2	2	1046	20.8
	136	140	140	140	140	140	70	70	70		
체육	2	2	2	2	2	2	3	3	3	733	
가정·정보	68	70	70	70	70	70	105	105	105		
총 수업시간	5402						3150			8552	100
참고수	6	6	8	8	9	9	11	11	12		
주당시간	23	23	26	27	28	28	30	30	30		
주업주수	34	35	35	35	35	35	35	35	35		

주①상단-1주간의 수업시수, 하단-1년간의 수업시수

주②%-과목수업 총 시간 중에서의 과목의 비율

出典: 李月順, 2006年

## IV. '조선학교' 를 둘러싼 문제

조선학교의 법률적 위치: ①외국인학교, ②학교교육법 83조 각종학교(전수 학교가 아님).

문제점 ① 재정보조: 일본으로부터의 사학조성이 없다. 지방자치체로부터의 보조가 전부. 단 사학경상비의 약 3분의 1에서 30분의 1. 나머지는 학부모, 동포, 공화국, 일부 지역으로부터의 모금

② 졸업자격: 대학교 입학자격, 국가자격, 취직조건문제.

국립대학 입학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시제진학, 단위제 고등학교 ⇒ 대학수험.

2003년 인터네셔널 스쿨에 대해, 학교 단위에서 자격심사에 의해 입학자격을 허가. 조선학교에만 학생의 개별심사. 그 뒤, 각 대학의 판단으로 개별심사에서부터 학교심사에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결론으로.

2003년부터 인터네셔널 스쿨은 학교단위로 자격심사에 의해 입학자격을 허가. 조선학교에게만은 학생의 개별심사.

③ 학생할인 문제: 1994년 JR이 외국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할인을 시작했다.

④ 스포츠공식경기 참가자격: 1994년 전국 고등학교 체육연맹, 1996년 전국 중학교 체육연맹, 특례로서 가맹.懸(현)대표로써의 원정보조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⑤ 학교보전: 공적보조금은 시가(滋賀)현 오오츠(大津)시만 지급하고 있음(2004년 현재)

⑥ 세제(稅制): 유럽계 인터네셔널 스쿨은 기부금에 관해 세제상의 우대가 인정됨. 조선학교, 중화(中華)학교는 대상 밖.

## V. '한국계 민족학교'

연구자의 문제: 소수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연구 대상으로 보아오지 않았다.

1조교 3개 학원(교토1, 오사카2), 각종학교(도쿄 1개 학원) - 특색에 차이가 있다.

백두학원의 사례

1946년 설립, 1951년 학교교육법 1조교 자격을 얻었다.

유치원 30명, 소학교 170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8명. 주로 오사카 시내에서 통학.

42명의 교원들 중 3분의 1이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함.



## <표 2> 건국학교의 커리큘럼

교과	과목	1년	2년	3년
특설 과목	한국지리		1	
	한국사			1
필 수 과 목	국어	6	5	6
	사회	4	4	3
	수학	5	5	5
	이과	4	4	4
	음악	1	1	1
	미술	1	1	1
	보건체육	2	3	2
	기술가정	2	2	2
	외국어(영어)	5	4	5
도덕		1	1	1
특별활동		1	1	1
한국어		3	3	3
총합		3	3	3

출처: 백두학원연합안내

특징: ①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양쪽에서 학교로서 인정받는 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한 교육. 1985년까지 사학조성은 받을 수 없었다.

‘사립학교 자주성의 범위 내에서’의 민족교육.

모국어, 한국사, 한국지리, 클럽활동 등을 통한 민족교육.

한국 정부에서의 교원파견(1977년부터)과 지원금을 승낙.

2008 년도에 중지. 주로 모어, 역사를 담당.

민족교육의 교재는 ‘재외동포대상교과서’ 사용. -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②인터네셔널 스킴화 트라이링걸 교육.

‘재일’ 한국에서부터의 일시 체류 학생, 일본 국적의 아이들 등도 있다.

③대학수험 대상 중시, 일본·한국 대학에 특별 진학 코스

※건국학교 교장을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교원 중에서 발탁(2009년~)

### VI. 민족학급

민족학급: ①일본의 공교육에서 실행되고 있는 재일조선인교육

②1965년 이후, ‘특별한 교육’은 금지해왔지만, 1991년 한일정부의 ‘각서’에 의해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이라면 인정함. 오사카(大阪)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재를 작성

형태

① 각서형 민족학급: 조선인측 대표와 지방자치체의 장과의 ‘각서’를 기본으로 한 학급. 민족강사도 상근(강사)으로 보장.

② 72년형 민족학급: 오사카(大阪)시립 나가하시(長橋) 초등학교 민족학급(1972년)이후에 설치된 것. 부락 해방교육의 대치속에서 조선문제연구부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바라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시.

I 일본인 강사의 참가II 자원봉사 민족교육강사 ⇒ 촉탁에 준함’ 확인서’.

〈표 3〉 오사카(大阪)시내 소·중학교에 있어서의 민족학급 설치상황

지역	학교수	민족학급 설치교	비율
키타오사카지역	69	12	17.4%
쵸호쿠지역	66	10	13.6%
동부지역/히가시나리	15	4	26.7%
이쿠노	29	25	86.2%
합계	44	29	65.9%
중앙지역	34	2	5.9%
남동지역/가미히라노	44	15	34.1%
히가시스미요시	29	7	24.1%
합계	73	22	30.1%
미나미오사카·니시나리	20	11	55.0%
스미노에·스미요시	43	12	27.9%
합계	63	23	36.5%
기타(미나토지역, 니시오사카지역)	82	0	0%
오사카시내 합계	431	101 (2006.4현재)	22.7%

출처: 오사카민족교육60년지 편집위원회 편, 2005년

(출처: 오사카 민족교육 60년지 편집위원회, 2005년)

정리 - '민족교육' 이 제기해온 문제

① 공교육의 민족성을 드러냄

'공교육' = '세속화' 환상, '민족성' 에서의 이탈의 곤란성

② 국민국가재고(再考)의 촉진

민족성(Ethnicity)(민족적·문화적 귀속성)은 개인의 국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단일민족 환상에 바탕을 둔 '동화(同化)' 주의를 드러낸 점.

1965년 한일조약체결에 의한 문부차관통달 (12월 28일)

권리로서의 의무교육 무상을 확인 ⇒ '일본인과 같은 취급' = 민족적·문화적 차이의 부정.

진후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국민교육' 론에서 '재일' 이 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밖아 온 문제

※ 식민지 정책으로서의 동화정책과는 다름

⑤ 인권으로서의 '민족교육권' 의 제기.

### 제3장 '교원의 질의 보증' 문제—대학원에의 교원파견연수를 중심으로—

본 장은 ①문부과학성이 일본의 교육을 지탱하는 교원의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여기서 말할 점은 문부과학성의 인식과 개혁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총자본, 국가기구내부의 다양한 벡터의 힘의 관계의 총체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의 정치학적 분석은 본고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한다. ②이점에 입각하여 어떠한 개혁을 시험 삼아 보려고 하는가 라는 점의 해명을 과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해 온 제 1, 2 장과는 다른 과제설정이지만, <동화와 배제의 교육구조> 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담당자인 교원의 재교육(연수, 나아가서는 교원양성의 자세를 철저히 하는 진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필자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문부과학성의 데이터로부터 본 교원의 문제상황=과제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금후의 면허제도의 존재방식에 대해(2006년 11월)' 를 축으로 전개한 '교원 질의 보증' 개혁의 내용과 실태를 명확히 한다. 이 작업은 교원의 대학에 있어서의 연수제도라는 형태로, 교원양성에 관련한 대학의 커리큘럼, 인적 배치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않는 상황을 확인한다. 이 점은 진부하지만 일본의 교육에 대해 해가 큰 개혁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장은 2010년 1월 6일, 춘천교육대학대학원 교육행정 특별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나를 초빙한 춘천교육대학의 이주한 선생님으로부터 지시 받은 [일본대학에 있어서의 교원의 파견연수의 현황과 과제]라는 내용을, 내



나름대로 부풀린 것이다.)

**I. 실패의 스파이럴= '교육개혁' 을 지탱하는 배경**

세계의 교육요구: '살아가는 힘', '인간력' = 신 자유주의적 사회에 견딜 수 있는 자질  
 PISA(학력 도달도 조사)쇼크⇒ '유토리 교육'의 재검토⇒ '전국 학력 테스트' 실시문제  
 '내셔널 아이덴티티' 문제⇒만들어진 '전통', '문화론'의 강화  
 계층격차의 확대와 부모의 교육요구의 '다양화', '폭력화' : 분명하게는 '수험' 과 몬스터 페어런트

**II. 문부과학성의 자료에서 본 교원의 '현황'**

**1. 징계처분의 현황**

참고 1:공무원의 징계처분은 면직, 정직, 감봉, 계고, 법률상의 처분이 아닌 것으로서는 훈고, 엄중주의가 있다. ()안의 숫자는 감독책임처분 수.(처분총수와는 별개)  
 (출전 :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이하의 표의 출전은 모두 동일)

처분내역	징계처분자수	훈고를 포함한 총수
교통사고	422 명 (8 명)	2502 명 (135 명)
생의행위	5 명 (0 명)	5 명 (0 명)
제벌	140 명 (3 명)	376 명 (155 명)
음란행위	160 명 (15 명)	176 명 (108 명)
공배, 급여 부정수급	34 명 (36 명)	73 명 (267 명)
국기개양, 국가제창	31 명 (0 명)	69 명 (2 명)
개인정보 부정 취급	75 명 (0 명)	277 명 (134 명)
기타	192 명 (71 명)	542 명 (211 명)
합계	1059 명 (71 명)	4020 명 (1022 명)

**2. 분한처분상황**

분한처분 : 직급의 유지, 존속이 가능하지 못할 상태에 대한 의도적인 처분. 공무원 특유의제도로써 의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표 4> 「분한처분의 현황일관」 200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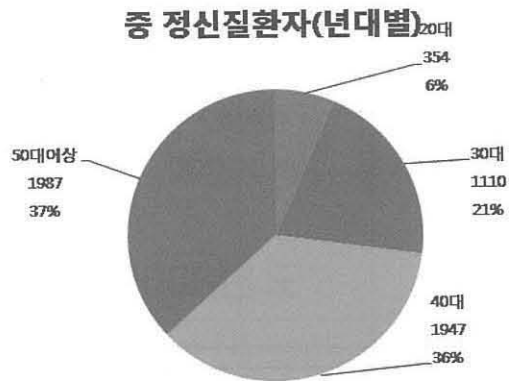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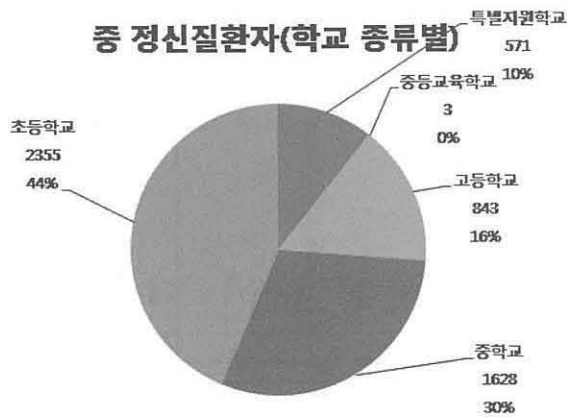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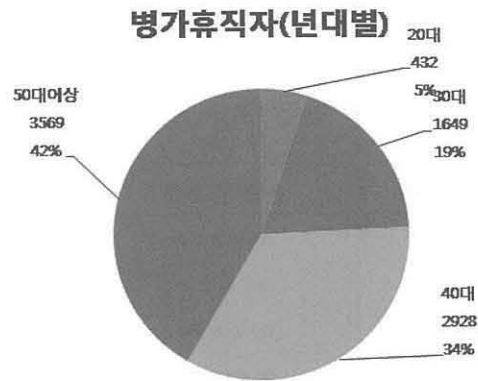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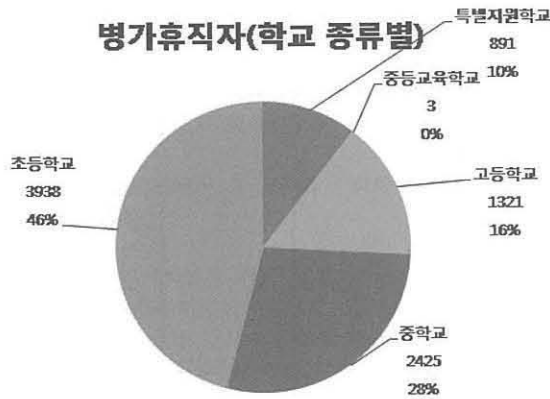
현시명	분한처분의 종류							합계
	강업	면직	유직			그외	감봉	
			기소유직	범가유직				
				정신질환				
홋카이도					273	178		273
아오모리					122	55		122
이와테			1		111	68		112
미야기			1		105	65	1	107
아키타					48	31		48
야마가타					74	43	3	77
후쿠시마					106	75		106
에바라키			3		83	51		86
도치기			3		114	81		117
군마		1			117	55		118
사이타마			1		403	210		404
치바		1			314	194		315
도쿄	1	3	1		788	540	45	838
가나가와					311	183	11	322
니이가타					129	99		129
후쿠야마					72	40		72
에시카와					74	39		74
후쿠에					52	35		52
야마나시			1		23	18		24
나가노					98	75		98
기후			1		115	73		116
시즈오카					81	57	3	84
아이치			1		329	204		330
미에					119	71	2	121
시가					87	63		87
교토					86	59		86
오사카					482	346	37	519
효고			1		202	94	26	229

나라				82	49			83
와카야마		1		102	55			102
돗토리				51	32			51
시마네			1	69	46			70
오카야마				132	82	4		136
헤로시마				207	126			207
야마구치				109	53	6		115
도쿠시마	1			50	37	4		55
카가와				59	34			59
아이치				91	54			91
고치		1		81	43			82
후쿠오카		1	1	203	137	2		207
사가				71	49	3		74
나가사키	2			89	52			93
구마모토				125	94	2		125
오이타	1			101	82			102
돗토리				93	49			93
가고시마				132	83			132
오кина와				382	156	5		387
삿포로시				69	56			69
센다이시				49	35			49
사이타마시				47	19			47
치바시				44	27			44
가와자키시				68	52	3		71
요코하마시			1	210	146	5		216
니이가타시				43	33			43
시즈오카시				6	6	2		8
히마치시				12	6	4		16
나고야시				127	91			127
교토시				199	118			199
오사카시				238	189	14		252
사카이시				65	49			65
교베시				62	29	10		72
헤로시마시				64	45			64
키타큐슈시				44	29			44
후쿠오카시				84	58			84
합계	5	8	17	8,578	5,400	192		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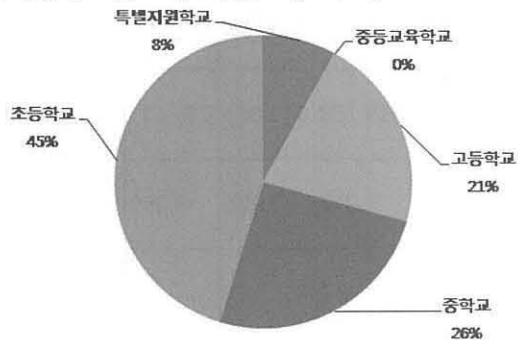
<표 5> 병가휴직자 등의 추의 1999년~200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재직자수 (A)	939,369	930,220	927,035	925,938	925,007	921,600	919,154	917,011	916,441	915,945
병가휴직자수 (B)	4,470	4,922	5,200	5,303	6,017	6,308	7,017	7,655	8,069	8,578
정신질환의한 휴직자수 (C)	1,924	2,262	2,503	2,687	3,194	3,559	4,178	4,675	4,995	5,400
재직비율 (%)										
(B) / (A)	0.48	0.53	0.56	0.57	0.65	0.68	0.76	0.83	0.88	0.94
(C) / (A)	0.2	0.24	0.24	0.29	0.35	0.39	0.45	0.51	0.55	0.59
(C) / (B)	43	46	48.1	50.7	53.1	56.4	59.5	61.1	61.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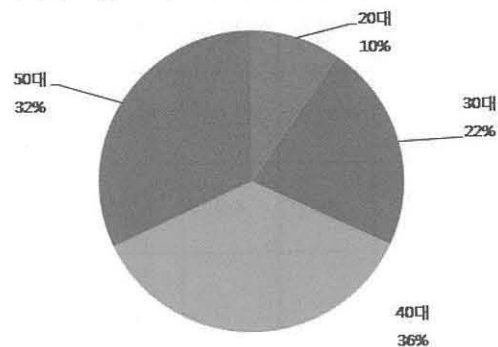
<도표 1> '병가휴직자 등의 학교종별·년도별·성별·직종별 현황'



《참고》 공립학교종별 교원구성 비율 (헤이세이 20년도 학교기본조사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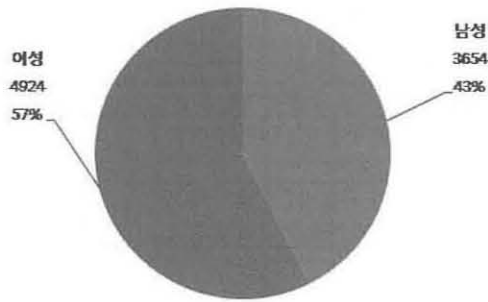
《참고》 공립학교별 교원년대별 구성비율 (헤이세이 20년도 학교기본조사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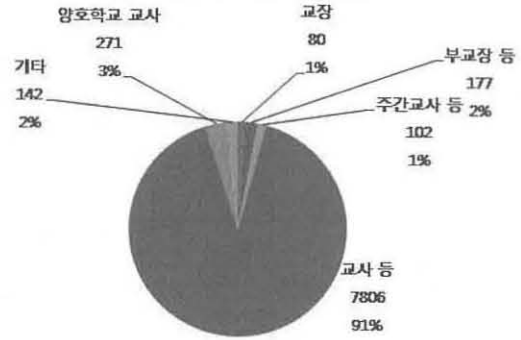
	재작자수	구성비율		본무교원수	구성비율
특별지원학교	73333	45.1%	20대	78702	9.6%
중등교육학교	717	25.5%	30대	184080	22.4%
고등학교	195034	23.1%	40대	295941	36.0%
중학교	233581	0.1%	50대	263132	32.0%
초등학교	413280	8.0%	계	821855	100.0%
계	915945	100.0%			

(주)제직교원은 해당 년도의 학교기본조사보고서에 있어서의 공립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교장, 부교장, 교감, 주간교사, 지도교사, 교사, 준교사, 양호학교 교사, 양호학교 준교사, 영양사, 강사, 학습보조 및 기숙사 지도원(본무자)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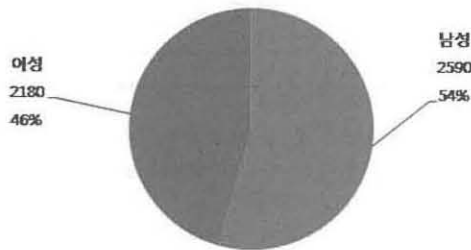
**병가휴직자(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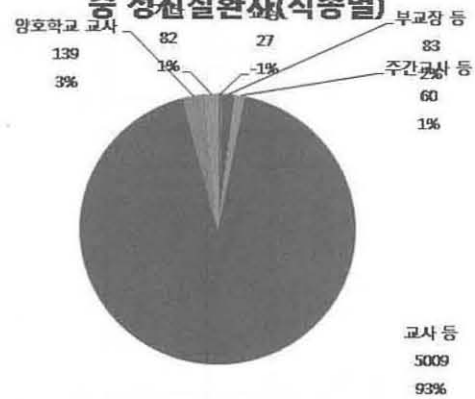
**병가휴직자(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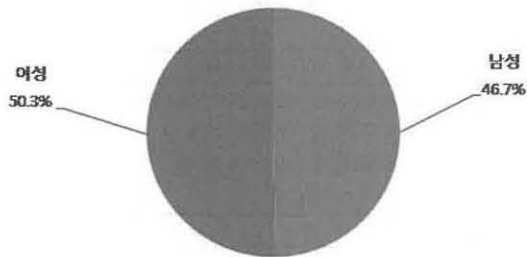
**중 정신질환자(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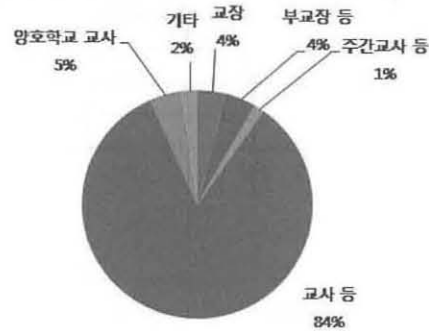
**중 정신질환자(직종별)**



《참고》 공립학교 성별 교원수 구성비율 (헤이세이20년도 학교기본조사로부터)



《참고》 공립학교 직종별 교원수 구성비율 (헤이세이20년도 학교기본조사로부터)



	재직자수	구성비율	본무교원수	
			인원	구성비율
남성	455138	49.7%	교장	35977 3.9%
			부교장 등	39806 4.3%
			주간교사 등	13115 1.4%
여성	460807	50.3%	교사 등	766256 83.7%
			양호학교 교사	40684 4.4%
계	915945	100.0%	기타	20107 2.2%
			계	915945 100.0%

(주)부교장은 교감을 포함, 주간교원은 지도교사를 포함, 교사 등은 준교사, 강사를 포함. 양호학교 교사는 양호학교 조교사를 포함. 기타는 영상사, 실습 보조 및 기숙사 지도원을 나타냄.

<표 6> 병가휴직을 제외한 분한처분의 처분사유 일관(헤이세이 20년도)

현 시 명	처분 년 월 일	분한처분의 종류				강급	합계	처분사유	
		강입	면직※1	휴직※2					
				기소휴직	기타				
이와테	20 11 28			1			1	준 강제 성주행	
미야기	19 4 1					1	1	연구휴직(분한조례)	
	21 3 7			1			1	도박	
야마가타	19 4 1					1	1	연구휴직(분한조례)	
	19 4 1					2	2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이바라키	20 5 31			1			1	상해,기물파손	
	20 7 18			1			1	강간	
	20 10 12			1			1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	
도치키	19 10 12			1			1	절도	
	20 3 12			1			1	현 피해 방지 조례 위반	
	20 12 19			1			1	아동복지법 위반	
군마	20 5 30		1				1	심신의 피폐	
사이타마	19 2 2					1	1	강제 성주행	
치바	20 9 17		1				1	적격성 결여	
도쿄	19 8 2			1			1	1	적격성 결여
	20 4 1 외					13	13	13	연구휴직(분한조례)
	20 4 1 외					32	32	32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20 5 22	1					1	1	적격성 결여
	20 6 15		1				1	1	심신의 피폐 및 적격성 결여
	20 7 11			1			1	1	적격성 결여
	20 10 31			1			1	1	적격성 결여
가나가와	20 4 1 외					11	11	11	연구휴직(분한조례)
야마나시	20 8 14					1	1	1	무단침입
기후	20 6 30					1	1	1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죄
시즈오카	20 4 1 외					3	3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아이치	20 12 1					1	1	1	각성제 취급법 위반
미에	19 4 1 외					2	2	2	연구휴직(분한조례)
오사카	20 4 1					37	37	37	연구휴직(분한조례)
효고	18 4 1 외					5	5	5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19 4 1 외					18	18	18	연구휴직(분한조례)
	19 4 1 외					3	3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20 6 16					1	1	1	심신의 피폐
나라	20 12 24		1				1	1	자동차 운전 과실치사
시마네	20 12 26					1	1	1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오카야마	18 4 1 외					4	4	4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야마구치	19 4 1					6	6	6	연구휴직(분한조례)
도쿠시마	20 4 1 외					4	4	4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21 2 17	1					1	1	적격성 결여
고치	21 2 23		1				1	1	근무실적 불량 및 적격성 결여
후쿠오카	20 3 31 외					1	1	1	도로교통법 위반
	20 4 1					2	2	2	연구휴직(분한조례)
	21 3 31		1				1	1	적격성 결여

사가	19 4 1 외				3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나가사키	19 7 1 외 20 7 15 20 7 22	1 1			2		2 연구휴직(분한조례) 1 적격성 결여 1 적격성 결여
오이타	20 9 1	1					1 적격성 결여
오кина와	18 8 31 외				5		5 연구휴직(분한조례)
카와자키시	18 4 1 외				3		3 연구휴직(분한조례)
요코하마시	19 4 1 외 20 12 10			1	5		5 연구휴직(분한조례) 1 강제 성추행 미수
시즈오카시	19 4 1 외				2		2 연구휴직(분한조례)
하마마츠시	20 4 1 외				4		4 연구휴직(분한조례)
오사카시	20 4 1 외				14		14 연구휴직(분한조례)
고베시	18 4 1 외 18 4 1 외				7 3		7 연구휴직(분한조례) 3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분한조례)
합계		5	8	17	192	0	222

\*1 면직의 내역 근무실적 불량 및(또는)적격성 결여 : 6명, 심신의 파궤 : 2명

\*1 휴직의 내역 기소휴직 : 17명, 연구휴직(국내, 국외) : 133명,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행 : 59명



〈표 7〉 이직의 이유 별 연령구분 별 이직교원 수 (2007년도)

(명)

구 분	계	정년(권고퇴직) 으로	병세로 인해	사 망	전근으로 인해	대학등의 입학 으로	기타
계	14,812	9,928	379	220	1,215	38	3,032
국 립	46	7	1	1	20	-	17
공 립	14,498	9,873	370	217	1,136	32	2,870
사 립	268	48	8	2	59	6	145
남	5,704	3,831	128	133	882	15	715
녀	9,108	6,097	251	87	333	23	2,317
2 5 세 미 만	287	1	27	2	36	9	212
25세이상30세 미 만	734	1	38	6	100	10	579
30 " 35	488	-	24	4	57	7	396
35 " 40	480	3	36	10	106	5	320
40 " 45	537	11	25	23	229	2	247
45 " 50	860	102	41	40	321	2	354
50 " 55	2,217	1,395	80	71	271	3	397
55 " 60	3,864	3,201	99	57	85	-	422
60 " 65	5,321	5,199	9	7	8	-	98
6 5 세 이 상	24	15	-	-	2	-	7
중공립							
남	5,554	3,799	122	130	832	12	659
녀	8,944	6,074	248	87	304	20	2,211
2 5 세 미 만	259	1	25	2	31	6	194
25세이상30세 미 만	672	1	37	6	79	8	541
30 " 35	440	-	24	4	43	7	362
35 " 40	454	3	34	10	98	4	305
40 " 45	511	11	25	23	215	2	235
45 " 50	839	102	41	40	312	2	342
50 " 55	2,202	1,393	79	69	266	3	392
55 " 60	3,842	3,197	99	56	84	-	406
60 " 65	5,277	5,165	6	7	8	-	91
6 5 세 이 상	2	-	-	-	-	-	2

(이직교원 초등교사)

보충 교사의 피폐

노동시간 : ● 2002 년도 전 일본 교직원조합 조사

하루 11 시간 2 분 (자택에서의 잔업포함)

1 개월의 초과근무 80 시간 10 분

● 2001 년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조사 하루 9 시간 42 분+자택에서의 잔업 1 시간 17 분

후생노동성의 '과로사 라인' 1 개월 초과근무 80 시간이 기준

번 아웃 (연소증후군): 오사카 교육문화센터 조사 번 아웃 정도 3(위험신호단계):34%

4(연소단계):16%

5(심각한 단계):

3 이상 총합 57%

⇒학급 규모, 주당 수업시간 수, 공무분담, 사무, 클럽지도, 행사, 연수에 교육내용(훈육중시), 부모의 교육요구의 다양화, 사회의 학교에의 압력, 교육조직의 자세 등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

### III. 교육의 질의 보증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회신 '금후의 교원면허제도의 방침에 대해' (2006 년 11 월)

①대학의 교직과정 개혁

②대학원의 면허증 개혁

구체적인 정책

#### 1. 교육과정의 질의 향상

지도체제의 정비 '교육실천연습' 의 신설.필수화(4 학년 2 학기.2 단위)

지도의 법령화, 명확화

교내 '교원양성 커리큘럼 위원회' 의 기능충실. 명확화

사후평가·인정심사의 충실 시정권고, 인정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정비

#### 2. 교직대학원의 창설 :

이유·기능: ①실천적 지도력을 갖춘 신인 교원양성

②중심적·지도적 역할을 현직 교원의 연수

교육과정: 5 영역으로 구성

①교육과정의 편성.실시에 관한 영역

②교과서 등 실천적인 지도방법에 관한 영역

③생활지도, 교육상담에 관한 영역

④학급, 학교경영에 관한 영역

⑤학교교육과 교원에 자세에 관한 영역

내용: 사례연구, 필드워크 중시

교원조직: 실무가 교원 4 할 이상

수업연한: 표준 2 년

수료요건: 2 년 이상 재학, 45 단위 이상 습득(10 단위 이상은 학교에 있어서의 실습)

#### 3. 교원면허 갱신제도 도입

취지: 면허의 유효기간을 마련해, 그때그때 요구되는 자질능력의 습득을 체크

유효기간: 10 년

갱신요건: 유효기간 내(직전 2 년간)에 대학에서의 강습 수강과 종료시험의 합격(30 시간: 필수 12 시간, 선택 18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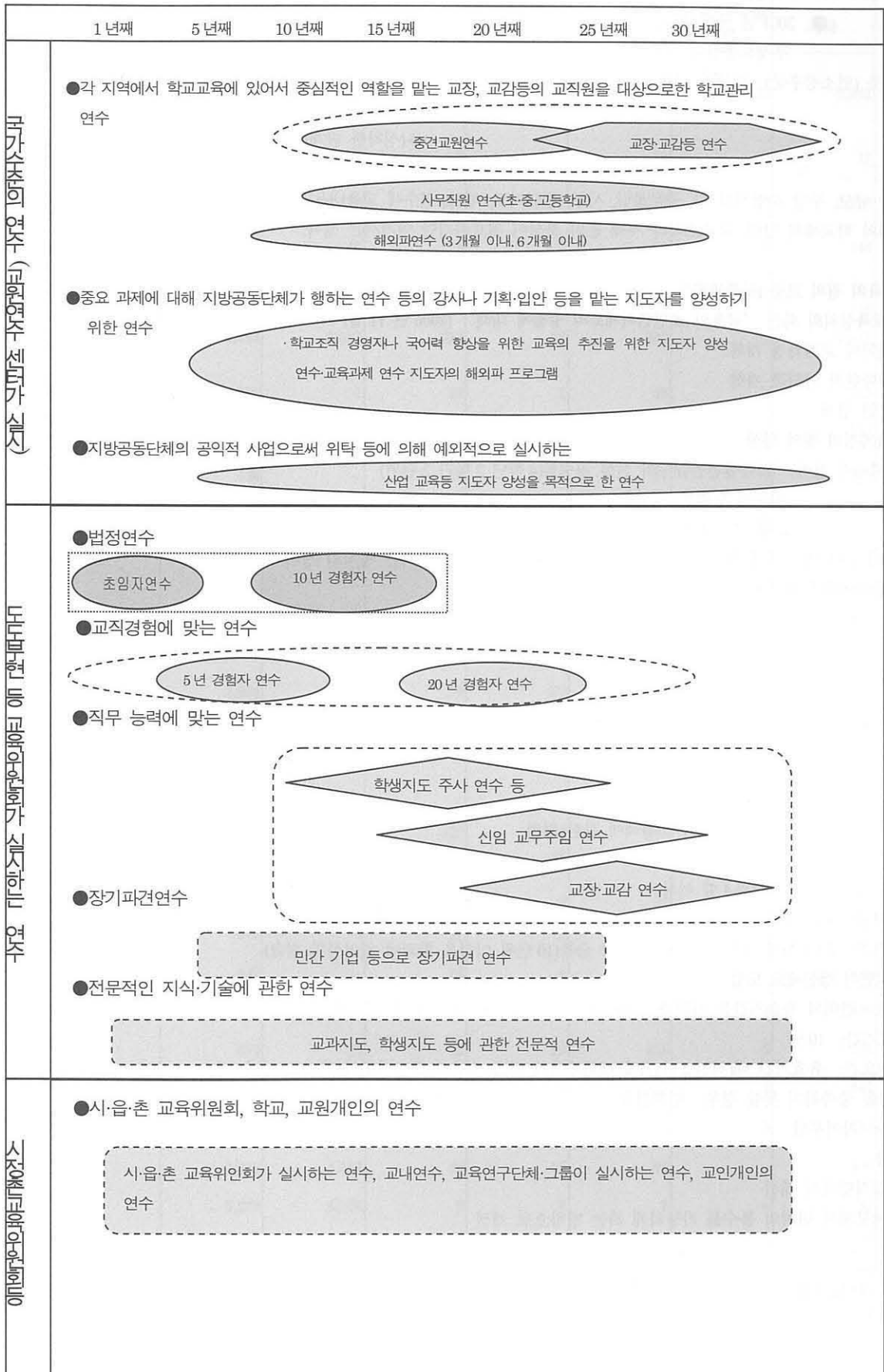
비용: 자기부담

#### 4. 기타

근무실적평가의 개선

분한처분자의 면허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

## <그림 1> 교원연수실적체계 참조



1. 장기연수 : 1 개월부터 1 년의 파견제도. 당초에는 도도부현·정령지정 도시의 교육센터와 대학원(특히 나루토 교육대학, 효고 교육대학, 조에츠 교육대학원 과 같은 신교육대학의 대학원)에 파견되었지만, 현재는 사회체험연수로서 운용 되고 있다.

2. 전문적인 지식·기술에 관한 연수:

국립의 교원양성계 대학원을 중심으로 현재국내외에서 약 1500 명 전후의 현직 교원(연수 등 정수 기본)이 1 년 또는 2 년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다.

① 임명권자에 의한 ‘대학원예의 파견연수’ : 행정

상의 필요에서부터 연수명령을 동반해 파견 되는 제도로, 파견되는 대학원은 임명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② 대학원 취학휴업제도에 의한 파견연수: 전수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2001 년부터 실시된 제도. 2009 년 4 월 1 일 현재 휴업자 218 명(해외 37 명), 2001 년부터 총합 1,337 명. 1 년을 단위로 3 년을 넘지 않는 기간.

휴업 중으로 간주되어 신분은 보장하지만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조합 자격은 존속, 급여, 퇴직금의 환산은 자치체의 결정에 따른다)

대학원은 선택할 수 있다. (신 교육대학이 아닌 교원양성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희망자가 많다)

임명권자에 대학원수험신청⇒심사(커리큘럼, 내신서) ⇒허가⇒수험⇒합격⇒휴업

정원관리에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있다.

V. 교직대학원의 정체?

1. 설치상황

2008 년도: 19 대학설치

2009 년도: 5 대학설치, 국립 18 대학(입학정원 631 명), 사립 6 대학(195 명)

국립 교원양성 단과대학

홋카이도교육대학대학원, 미야기교육대학대학원, 도쿄학예대학대학원, 아이치교육대학대학원, 교코교육대학대학원, 나라교육대학대학원, 후쿠오카교육대학대학원

: 오사카교육대학 이외의 교원양성 단과대학이 설치

신교육대학

조에츠교육대학대학원, 효코교육대학대학원, 나루토교육대학대학원,

지방국립대학 소규모교

아마가타대학대학원, 후쿠이대학대학원, 기후대학대학원, 아자카대학대학원

: 개혁에 민감

지방국립대학 중규모교

군마대학대학원, 시즈오카대학대학원, 오카야마대학대학원, 나가사키대학대학원

: 근린대규모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위협

※구 제국대학 교육학부, 고등사범의 계통을 이어받은 대학뿐만 아니라 설치하지 않은 교육양성학부가 대부분. 교원양성단과대학에 돌출 하고 있다.

사립 유력사립대학

와세다대학교대학원

재정기반이 강고한 대학

타마가와대학대학원, 이쿄대학대학원

학생의 안정적인 확보조건을 가진 대학

소카대학대학원

그 밖에

세이토쿠대학대학원, 도쿄하가쿠엔대학대학원

※국립중심의 교원양성(각현 1 학부의 전통)에 반해, 비교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교원양성을 해 온 대학이 살아남아 들어감.(법과대학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경우)

2.특징 연구자도 아니고, 연구중심도 아니며, 연구자 교원만으로도 볼 수 없는 실무능력 중심형

석사과정과의 차이:

- 수료요건(석사과정:30 단위, 석사논문⇔교직대학원 45 단위(내 실습 10 단위))

- 교원은 실무가교원 4 할 이상 또한 전임으로 학부겸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 사례연구, 현지조사, 실습, 필수공통과목중시

- 대학원의 인정평가를 5 년마다 받아 질을 보장

다른 전문직대학원과의 차이 :

- 수업연한(법과대학원 3년, 다른 전문직 대학원은 같은 2년)
- 수료요건(법과대학원 93 단위, 다른 전문직대학원 30 단위)
- 실무가교원(법과대학원 2할 이상, 다른 전문직대학원 3할 이상)  
학교에 있어서의 실습의 연간 스케줄(이미지)

⇒ 그림 2. 【학교에 있어서의 실습】 연간 스케줄의 이미지 참조

### 3. 입시실시상황(2008년도)

	입학정원	지원자	지원비율	합격자	입학자	
국립	571	695	1.2	553	522	지원자는 현직이 아닌 쪽이 많으나 합격은 현직이 웃뽀
사립	135	249	1.8	129	122	압도적으로 현직이 아닌 지원자, 합격자
합계	706	844	1.3	682	644	국립, 사립 둘 다 정원을 못 미침

### VI. 면허 갱신제도의 파탄

2008년도: 시범적 시행

2009년도: 본격적 실시 인가제로 교직을 가진 국공립대학에서 실시

⇒표 8. '돛토리대학 교원 면허증 갱신 강습일관' 2009년도 참조

(출전:돛토리 대학교 홈페이지)

돛토리대학 필수강좌 : '교육의 최신정보'

1일째 교직에 대한 고찰 80분×2단위

아이들의 변화의 이해에 대해 80분×2단위

수료인정시험

2일째 학교내외의 연대협력에 대한 이해 80분×단위

교육정책의 동향에 대한 이해

수료인정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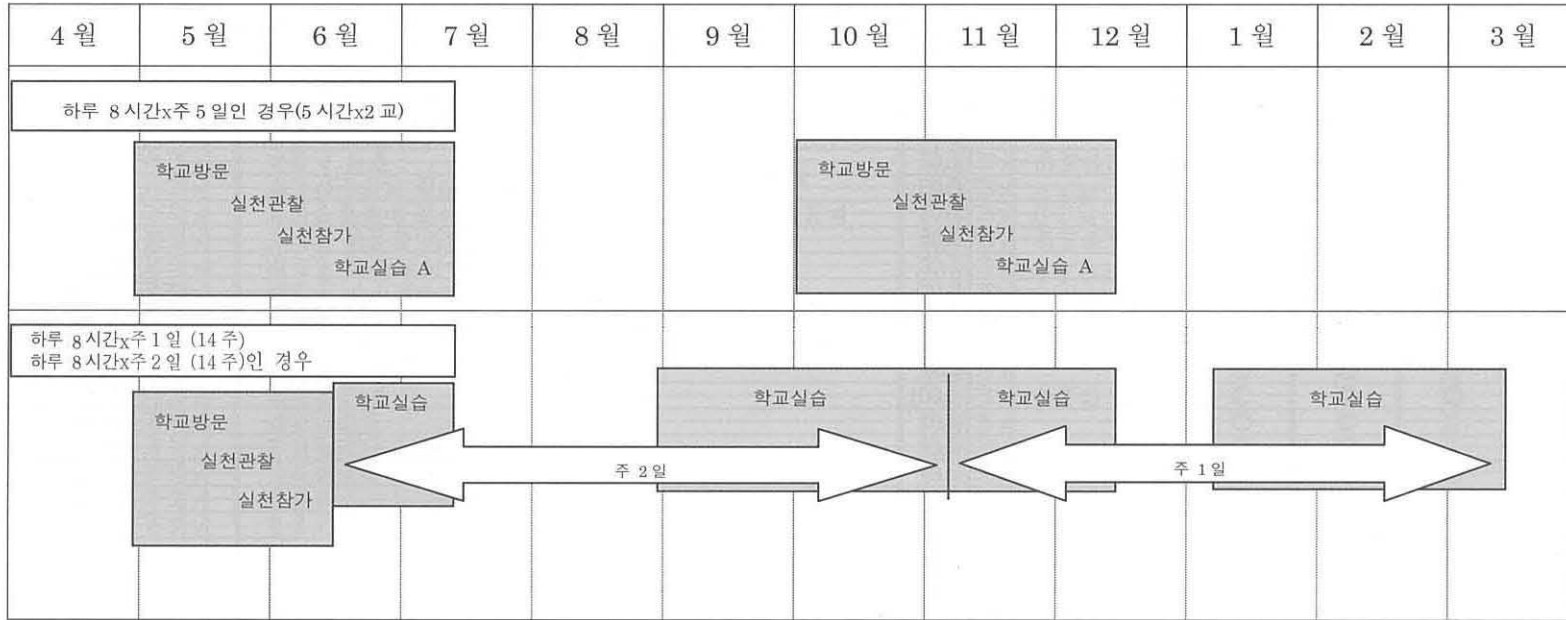
2011년도: 폐지인가?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성립에 의해 폐지의 방향성을 현재 검토 중

⇒대체안: 교직을 6년제?

면허취득 10년이 아닌, 출생 년으로 일률수강

'지도력부족교원' 배제는 못한 모양뿐인 것으로

<그림 2> ‘학교에서의 실습’ 연간 스케줄 이미지



(注)  
학교방문,  
실천관찰,  
실천참가는

주 5일 실습에서 계산

**실습학교방문**  
 · 학교 전체 개요의 파악(시설설비, 건물 등을 포함한다.)  
 · 실습방침, 커리큘럼의 특성과 구성 등 교무사항의 파악

**실천참가**  
 · 수업 등에서 보조로써의 수업참가를 중심으로 한 실천참가

**실천관찰**  
 · 수업, 부활동등 과외활동, 학생지도, 학교교육활동의 전체 관찰 및 이해  
 · 개인관찰(아동 학생 등 개인에게 착안하여 관찰한다.), 전체관찰(반이나 학년전체에 착안하여 관찰한다.)  
 · 포트폴리오의 작성

**학교실습**  
 · 수업 이외에 학생지도에 관한 내용, 교외활동·부활동등 교육과정의 활동등의 계획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대학교원에 의한 지도를 포함한다.  
 · 실습을 여러 학교에서 행할 경우 異校種, 부속학교와 제휴협력교 등, 실제 질의 차이 등의 조합이 생각되어진다.



### <표8>헤이세이21년도 돗토리대학교 교원면허증 갱신 강습 일관

돗토리대학

(기호) ◎:주요한 수강대상 학교, ○:수강 가능 학교, △:수강 하여도 상관 없는 학교

#### 필수강좌 (3강좌)

강습일	요일	회장	강좌명	정원	대상직종	수강 대상 학교 종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교
7월27일, 28일	월, 화	돗토리시	교육의 최신사정	20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7월30일, 31일	금, 토	요나고시	교육의 최신사정	20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11월14일, 15일	토, 일	돗토리시	교육의 최신사정	20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 선택강좌 (51강좌)

강습일	요일	회장	강좌명	정원	대상직종	수강 대상 학교 종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교
7월4일	토	요나고시	생명과학·재색의학의 토픽	50명	교사	○	○	◎	◎	○
7월11일	토	돗토리시	걸어서 깨닫는 돗토리사구의 지학	20명	교사	○	○	◎	◎	○
7월18일	토	요나고시	사춘기의 신체발육을 둘러싸고	2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7월18일	토	돗토리시	하이테크 미래와 소재과학	60명	교사		◎	◎	◎	○
7월25일	토	돗토리시	유유아기의 친구만들기	40명	교사	◎	○			○
7월29일	수	돗토리시	물건을 만드는 것이란?	20명	교사	○	○	○	○	○
7월29일	수	돗토리시	자연화재에서 사회를 지킨다	40명	교사	○	○	○	○	○
7월31일	금	돗토리시	노래부르는 즐거움, 코러스하는 기쁨	40명	교사	○	○			○
8월1일	토	돗토리시	사회학입문	40명	교사	○	○			○
8월1일	토	요나고시	학생의 건강	10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8월2일	일	돗토리시	미야자키 켄지의 음악 세계	40명	교사	○	◎	◎	○	○
8월3일	월	돗토리시	장애아의「자아형성」을 지원하는 단원·수업만들기—「단계별 교육내용표」「개별의 지도계획」「개별의 지원계획」의 활용—	50명	교사	○	○	○	○	◎
8월4일	화	돗토리시	새로운 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천	30명	교사	○	◎	◎	○	○
8월5일	수	돗토리시	새로운 중학교 이과교육의 교재개발	30명	교사		○	◎	○	○
8월6일	수	돗토리시	교재와 식육을 잇는다	4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8월6일	목	돗토리시	운동부활동에 있어서 부원 및 지도자가 안고있는 서문제	20명	교사		○	◎	◎	
8월7일	목	요나고시	생물다양성의 전략의 활동과 돗토리현의 현황	80명	교사	○	◎	◎	◎	○
8월7일	금	요나고시	식품과 건강	2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8월8일	금	요나고시	새로운 수학교육의 이론과 실천	40명	교사		○	◎	◎	○
8월8일	금	요나고시	가까운 역사유산(문화재)로 배우는 지역사	40명	교사		◎	◎	◎	
8월8일	토	돗토리시	식품과 건강	2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8월9일	토	돗토리시	산수교육의 교재만들기	40명	교사	○	◎	○	○	○
8월9일	일	돗토리시	「용서받는 글쓰기」의 학습지도	30명	교사	○	◎	◎	○	○
8월10일	월	돗토리시	인류는 지구상에 무엇을 남겨왔는가? 식료생산과 사막화 문	40명	교사	○	○	○	○	○
8월10일	월	요나고시	지역과 학교에 있어서의 건강과 체력—즐겁게 달린다·걷는다	4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8월11일	화	돗토리시	최선단 일렉트로닉의 세계	40명	교사		○	◎	◎	

8월11일	화	요나고시	인류는 지구상에 무엇을 남겨왔는가?~식료생산과 사막화 문제	40명	교사		○	○	○	○	○
8월17일	월	요나고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최선단	50명	교사		△	△	◎	◎	△
8월18일	화	돗토리시	새로운 보건의체육(체육)의 이론과 실천	40명	교사		○	◎	◎	○	
8월18일	화	쿠라요시시	초등학교 영어활동의 이론과 실천	40명	교사		○	◎	○		
8월20일	목	돗토리시	새로운 국어과의 수업 만들기(초등학교 편)	40명	교사		○	◎			○
8월21일	금	돗토리시	새로운 산수교육의 이론과 실천	100명	교사		○	◎	○	○	○
8월21일	금	요나고시	새로운 국어과의 수업 만들기(중학·고등학교 편)	40명	교사				◎	◎	
8월22일	토	쿠라요시시	식품과 건강	4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8월23일	일	돗토리시	19세기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와 사회	40명	교사			◎	◎	◎	
8월25일	화	요나고시	마음의 상처와 카운셀링—마음에 보태는 기술—	5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
8월29일	토	돗토리시	일본어의 역사	40명	교사			○	◎	◎	
8월29일	토	요나고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개척하는 지역만들기의 가능성	50명	교사		△	○	◎	◎	△
8월30일	일	요나고시	발달장애아에의 이해와 지원	10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
9월5일	토	돗토리시	아이의 생활리듬을 이해하는 수면교육	3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
9월5일	토	돗토리시	새로운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유·초)	20명	교사		◎	◎			
9월5일	토	요나고시	몸 기르기·몸풀기	2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
9월19일	토	돗토리시	이나바의 지지『무태안류기』의 근세와 근대	40명	교사			○	◎	◎	
9월19일	토	쿠라요시시	아이의 발달과 운동	40명	교사		◎	○			
9월19일	토	돗토리시	영어의 역사와 영국의 지명	40명	교사	○	○	○	○	○	○
10월3일	토	요나고시	알기 쉬운 헌법	50명	교사	○	○	○	○	○	○
10월4일	일	요나고시	인권교육의 기초이론	100명	교사	○	○	○	○	○	○
10월10일	토	요나고시	새로운 영어교육이론과 실천	30명	교사			○	◎	◎	
10월17일	토	돗토리시	사회·마음·뇌 : 위고츠키와 피아제의 시점	50명	교사·양호학교 교사	○	○	○	○	○	○
10월31일	토	돗토리시	지역복지의 추진과 학교의 역할	40명	교사	○	○	○	○	○	○
11월28일	토	요나고시	농산촌의 지역만들기	40명	교사			△	◎	◎	

주) 8/7과 8/8의 「식품과 건강」, 및 8/1-과 8/11의 「인류는 지구상에 무엇을 남겨왔는가?~식료생산과 사막화 문제~」는 돗토리시와 요나고시에서 같은 강좌를 개설합니다.

【회장】

돗토리시	:	돗토리대학 돗토리캠퍼스
쿠라요시시	:	돗토리 단기대학
요나고시	:	돗토리대학 요나고캠퍼스

【수강료】

필수강좌	:	1강좌	12,000엔
선택강좌	:	1강좌	6,000엔

【강좌의 일정】(강좌의 내용에 따라,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30 ~ 9:10	접수, 오리엔테이션
9:10 ~ 12:00	강의 등(80분×2교시)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강의 등(80분×2교시)
16:00 ~ 16:40	수료 인정 시험
16:40 ~ 16:55	사후평가, 사무연락

※상기의 헤이세이21년도 돗토리대학 교원면허증 갱신 강습은, 문부과학상의 인가후의 것입니다.

## VII. 근무실적평가제도

‘성과주의’의 도입: 일본의 대기업이 2002~4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도입한 목표관리제도를 2006년 10월 시점에서 시도부현·정령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의 대부분(60/62 : 자치체수가 현재와 다름)이 도입완료. 문부과학성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도력부족교원’의 배제 세트에 되어있는 것이 포인트.

‘우수교원’ 표창도 2008년 4월 시점에서 64 시도부현·지정도시 중 53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2006년부터 문부과학대신 ‘우수교원표창’도 시행되어 2006년도는 862명이 표창되었다. ‘우수교원’의 급여상의 조치는 7개 현에서 시작하고 있다.

### 이미지

목표설정→교장.교감에 의한 지도→실행→목표의 수정→교장.교감에 의한 지도→ 자기평가→교장.교감에 의한 지도와 학교의 경영방침의 제시→차기년도 목표설정

## VIII. ‘지도력부족교원’ 문제

‘지도력이 부적절한 교원’ (문부과학성의 정의):

지식, 기술, 지도방법 그밖에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 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동 등에게 지도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교유 등, 연수에 의해 지도의 개선이 기대되는 자로, 즉 후술 할 분한처분 등의 대상(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된 자, 근무실적이 좋지 않은 자, 정신질환의 경우)은 되지 않는 자를 말함

참고기준(판단은 각 교육위원회)

- ① 전문지식, 기술의 부족에 의한 학습지도가 적절히 실행 될 수 없는 경우
- ② 지도방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학습지도가 적절히 실행 될 수 없는 경우
- ③ 아동 등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욕이 결여, 학급경영이나 학생지도가 적절히 실행 될 수 없는 경우

⇒도표2 ‘지도력부족교원의 현황에 대해’ 참조

⇒그림3 ‘지도력부족교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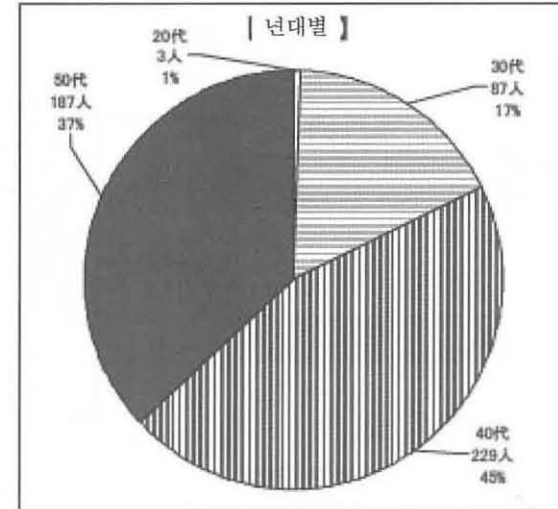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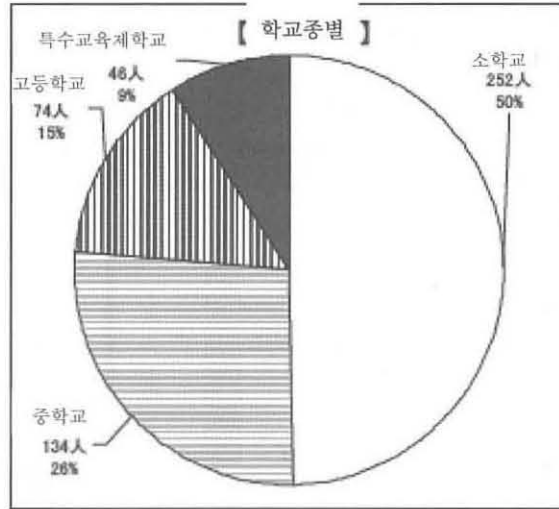
### 정리 — ‘질의 보증은’ 과연 보장되는 것일까? —

‘교원 질의 보증’이라는 이름의 불결한 권력작용

- ① 개혁의 전제로 노동 및 교육이라는 행위를 개인의 능력의 향상(개인화되는)과 이질적인 존재로 보는 배제가 일관되고 있다.
- ② 필요한 것은 실천연수인가? 실천은 교실에서 해야 하며 교사의 배움은 교실, 학교, 동료, 교원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교장, 교감,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지도의 활용. ‘교원 서로가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사상의 누락. 학습을 개인이 해체한 교육의 실천에도 이을 수 있다.
- ③ 대학의 자세도 질의 보증은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에 있어서의 知와 실천의 융합은 인식의 방법론으로서의 올바르지만, 대학에서의 연수는 실무실습 중시가 아닌 인식론중시가 기본. 다른 전문대학원대학과 성질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④ 질의 보증은 교원의 채용, 신분의 보장, 부담의 경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질의 보증이 거꾸로 일을 더욱 바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 피폐, 불안, 경쟁이 교사와 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경쟁시키면 학력은 올라가는가?)
- ⑤ 개혁의 모양만 갖추는 실태가 이미 보여 지는 것도 특징(너무나도 내용이 얇은 개혁). 이 때문에 연달아 개혁의 필요성이 이어진다. 사회의 개혁은 항상 그럴싸한 이유가 된다.

# <도표 2> 지도력 부족 교원의 현상에 대하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연수를 행하는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면직하는 등의 분한제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모든  
 도도부현·지정도시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 및 운용  
 되고 있다.(平成 18 년도에  
 政令市로 이행한 堺市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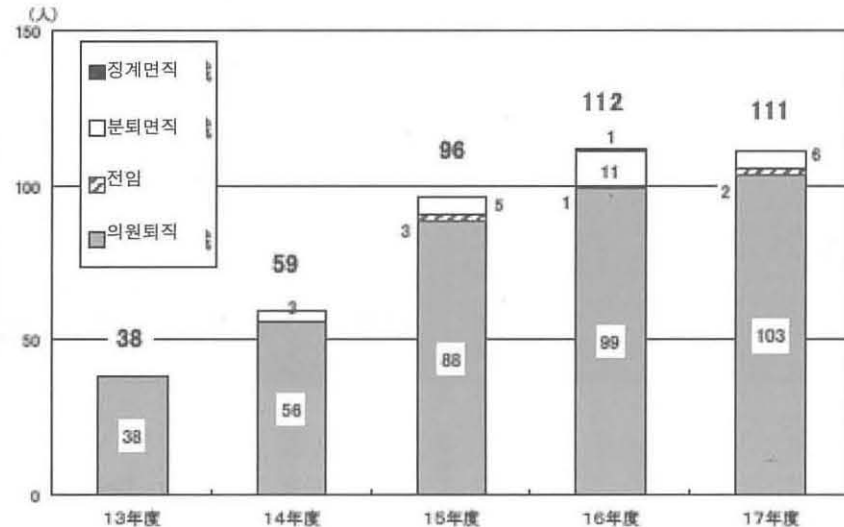


【지도력 부족 교원중에서 퇴직 등을 한 사람】

平成 17 년도의 경우, 지도력 부족 교원 인정자는 507 명이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자 총수 (H17+H18)	그 중, H17년 도 신규인 정자	① H17년도에 연수를 받은 사람							그 밖에 정년퇴직 병기휴가	② 그 밖에 (연수를 수강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받은 자) 의원빙직 10 분퇴휴직 9 육아휴업 1	③ H18년도부 터 연수
		현장복귀	의외퇴직	분퇴중직	분퇴휴직	전임	연수계속				
506	246	342	116	93	6	8	2	115	2	20	144

(参考) (H12) 65名, (H13) 149名, (H14) 289名, (H15) 481名, (H16) 566名



### <그림 3> 지도력부족교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 인사 관리 시스템 개요

##### <인정>

- ① 교장이 교육위원회(임명권자=도도부현·지정 도시 교육위원회)에 간청 (시정시 경우)
- ② 각 교육위원회에서 설치하고 있는 판정위원회에 의해 당해 교원 심사
- ③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교육위원회(임명권자)가 지도력부족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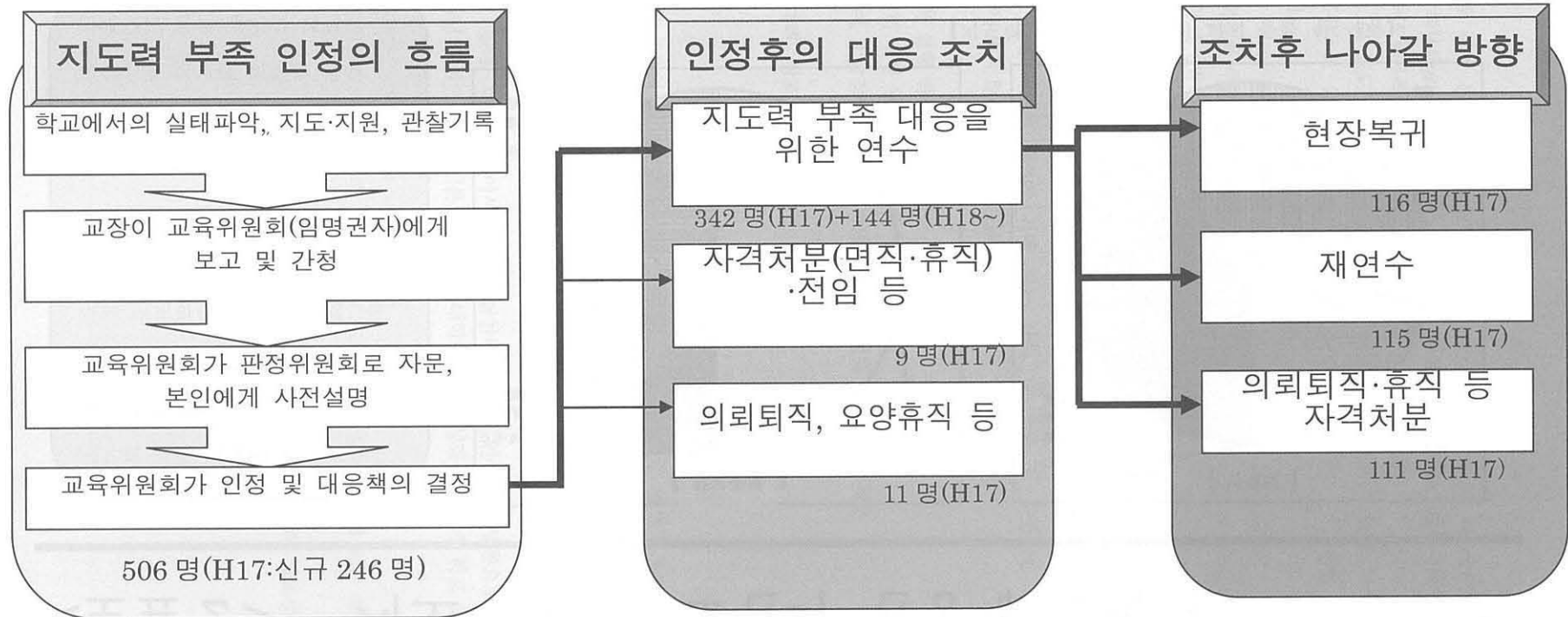
##### <대응>

교육위원회(임명권자)가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 또는 자격처분 등을 실시

##### <현상>

사카이시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지정도시에서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

### < 인사 관리 시스템의 흐름 >





## 마치며

2009년 11월부터 프랑스에서는 '국가(국민)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토론'이라는 의론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회하 '국가(국민)의 아이덴티티·이민성(2007년 설치, 이 존재만으로도 의문이 든다)'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의론, 약 300회의 다운미팅이 집중적으로 행해져 왔다. '프랑스인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라는 국가로부터의 물음 그 자체가 내셔널리즘의 강화와 이질적인 존재의 배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11월 24일자 '르몽드' 지상에 반대성명이 게재되어, 12월 2일부터 시작한 인터넷신문 '미디어바르'의 사이트상의 반대서명활동에 대해서는 12일간, 3700명의 서명이 모아졌다. 이 서명의 호소인중에는 드 필뱅 전 수상도 시민 200명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12월 4일에는 발리바에 의한 '국가(국민)의 정체성·이민성' 철폐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반대운동, 게다가 다운미팅에서의 혼란 속에서 2월 초순에 나올 예정이었던 보고서가 연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연간 약 20만명, 프랑스 국내에 현재 약 200만 명으로 증가한 이민의 존재, 리옹의 이민에 의한 '폭력', 이슬람권에서의 이민의 증가, 부르카 착용 논쟁에 단적으로 나타난 듯이 국민국가의 동요에 대한 현 정권, 더욱이는 보수파의 위기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발리바에 의해 대표되는 '좌파' 지식인으로부터도 '자유·평등·우애', '계몽주의', '인권의 보편성'이 '프랑스·이데올로기', '유럽·이데올로기'가 아닌가라는 의론이 활발히 주장되고 있어, 국민국가의 기만성의 이론적 현재화가 확연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글로벌화한 사회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다문화공생'이 지역국가의 다수에 의해 이야기 되고 있다. 니시카와 나가오에 의하면 '다문화주의'한 강제적인 '동화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을 언뜻 없애기 위한 국민통합 또는 사회적 통합 이데올로기처럼 여겨진다. 이 마음 편한 이데올로기는 다수와 소수의 비대칭성을 오픈=고정화 하는 기능을 다한다. 이것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혼합된 상황(제국)을 통제하는 동요하는 국민국가에 있어서 앞으로 필요 불가결한 이데올로기이다.

본 원고의 '정리'를 한창 쓰고 있을 때,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의 '고교의 실질무상화' 정책에서 일본 국내의 10개교 있는 조선고급학교를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각의 나카이 '납치문제' 담당대신으로부터 있었다. '북한에 경제제재를 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다. (「아사히 신문」 2월 26일 조간)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에 있는 이른바 1조교가 아닌, 각종학교이다. 다른 인터넷서널 스쿨과 같은 문부과학성이 국회심의를 걸쳐 성령으로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는가를 정하는 발향성에 있었다. 여기에 무시하는 태도로 앞서 기술한 반대가 내각으로부터 나와, 수상은 '외교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내용인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논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일본인과 국교상태인 나라의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놀랄만한 코멘트를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2월 27일 조간)

이 문제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아이'의 학습권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식으로 선 굵기를 하는가라는 논점이 기본이다. 즉, '문화공생'의 본질이 묻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면서 동시에 한반도와 '재일코리안'에 대한 강렬한 레이지즘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관심에서 오는 무지인지 의도적인 배제(여기가 주)인지 의론의 폭이 있는 듯이 생각되지만, 동시에 레이지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본고에서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있듯이, 조선학교의 커리큘럼은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이며, 여제 와서 시찰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는 문제가 문제의 아니다. (교과서는 열람 가능하지만, 가져오거나 복사는 금지이다.) 교육 내용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을 상징한 것이 아닌, 일본사회에 정주하면서 한반도의 언어·문화·아이덴티티를 소중히 하려는 것이다. 이 의론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과 일본에 정주하는 '재일코리안' 사회를 혼란하여 판단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 2월 27일판에서는 고용수(코난대학)가 기묘하게도 지적하고 있는 듯이, 조선학교가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도 재교생의 국적은 절반이상인 한국적이며, 정부 레벨에서는 '無知'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고급학교에서의 대학교 진학률은 이미 8월에 이르러 사립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대다수는 조선학교의 졸업생에 대해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하게 수업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론을 '내각불일치'라는 형태로 전개할 현 정권의 본질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글로벌리제이션 밑에서 동요하는 국민국가의 '국민' 통합의 정책은 현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프랑스에서 보았던 '국민'으로써의 아이덴티티의 재편·강화의 전략,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이는 '다문화주의' 전략도 그 동향의 한 끝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 제 1장·2장에서 본 일본의 현황과 고전적인 '전통·문화'의 강조에 의한 '동화'의 강화('귀화'의 간이화의 방향성의 전형)와 배제의 노골적인 존속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자체를 본고에서는 교육정책과 실태로 확인해 왔다. 민주당 정권이 어디까지 특별영주자의 지방참정권에 몰두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필자는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회의적이다. 제 3장에서 본 '교원의 질의 보증'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듯이



교육정책, 실행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닌 교육기술의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의 재교육, 양성, 더욱이 부적용자의 교육현장에서의 배제가 하나의 기능으로서 일관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통역, 자료의 번역 등에 대해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와 전무상, 김선혜에게 또한, 자료의 작성에는 dotsori 대학원 지역교육 연구과 대학원생의 고토 유스케에게 신세를 졌다.)

## 참고문헌

- 『民族教育』編集委員会編『在日朝鮮人の教育について』(民族教育'編集委員会、1965年)  
A・ミン『差別の構造』(合同出版、1971年)  
小沢有作『在日朝鮮人教育論—歴史篇』(亜紀書房、1973年)  
尹健次『孤絶の歴史意識—日本国家と日本人』(岩波書店、1990年)  
E・ホブズホーム/T・レンジャー編『創られた伝統』(紀伊国屋書店、1992年)  
小松裕他編『韓国併合'前の在日朝鮮人』(明石書店、1994年)  
小熊英二『単一民族神話の起源』(新曜社、1995年)  
森田芳夫『数字が語る在日韓国・朝鮮人の歴史』(明石書店、1996年)  
E・バリバール/I・ウォーラー스테인『人種・国民・階級』(大村書店、1997年)  
在日本大韓国民団中央本部編著『図表で見る韓国民団の50年の歩み』(五月書房、1997年)  
西川長夫『フランスの解体?』(人文書院、1999年)  
『李慶泰の歩み』刊行委員会編『分断と対立を超えて』(海風社、1999年)  
西川長夫『増補 国境の越え方』(平凡社、2001年)  
小森陽一『ポストコロニアル』(岩波書店、2001年)  
大阪民族教育60年誌編集委員会編『大阪民族教育60年誌』(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2005年)  
真田信治他編『在日コリアン言語相』(和泉選書、2005年)  
朴鐘鳴編『在日朝鮮人の歴史と文化』(明石書店、2006年)  
学校法人白頭学院『白頭学院創立60周年記念誌 建国』(学校法人白頭学院建国幼・中・高等学校、2006年)  
小森陽一『レイシズム』(岩波書店、2006年)  
テッサ・モリス・スズキ『愛国心を考える』(岩波ブックレット、2007年)  
藤田昌士『学校教育と愛国心』(学習の友社、2008年)  
一盛真『愛国心』教育の歴史研究』(『教育』2009年6月号、国土社)  
井上正一他『在日コリアン人権白書2008年度版』(社団法人大阪国際理解解放研究センター、2008年)  
『週間ダイヤモンド』2009年10月31日特大号(ダイヤモンド社、2009年10月)

## 要旨

### グローバル化下の揺らぐ国民国家

#### —「同化」と排除の教育構造—

一盛 真 (准教授・発達科学講座)

キーワード: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国民国家, 「同化」, 排除, 教育基本法, 「在日コリアン」, 教員養成

本稿は、2009年10月～2010年1月にかけて、韓国の大学でのおこなった3つの別々の講演・特別講義の内容を通して、現代日本教育の課題の一端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グローバル化の進行＝「国民国家」の揺らぎに対応する教育政策(「教育基本法」改正、第1章)とそこから排除されている「民族教育」の実態(第2章)、そのもとで文部科学省が進める「教員の質の保証」の本質、すなわち「実践力」強化・排除の構造、そして教員の研修制度改革が、教員養成にかかわる大学のあり方にまで踏み込む危険性が存在する点(第3章)を明らかにした。

2009年11月からフランスでは、「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ついての討論」という議論を、国家が「国民」に対して投げかけている。サルコジ大統領の下、「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移民省」(2007年設置、この存在だけでも疑問である)によるネット上で議論、約300のタ

ウン・ミーティングが集中的に行われてきた。「フランス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は何か」という国家のからの問いかけそのものが、ナショナリズムの強化と異質な存在の排除をちらつかせている。

この動きに対して、11月24日付け「ル・モンド」紙上に反対声明が掲載され、12月2日から始まったネット新聞「メディア・パール」のサイト上の反対署名活動に対しては、12日間で37000人の署名が集まっている。この署名の呼びかけ人にはドヴェルパン元首相も市民200人とともに名を連ねている。12月4日にはパリパールらによる「(国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移民省」撤廃要求も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反対運動、さらにはタウン・ミーティングでの混乱のなか、2月の初旬に出される予定であった報告書が延期される事態となっている。

これは、年間約20万人、フランス国内に現在約200万人に増加した移民の存在、リヨンの移民による「暴動」、イスラム圏からの移民の増加、ブルカ着用論争に端的に示されるように、国民国家の揺らぎに対する現政権、さらには保守派の危機感の現れである。また、パリパールに代表される「左派」知識人からも「自由・平等・友愛」、「啓蒙主義」、「人権の普遍性」が「フランス・イデオロギー」、「ヨーロッパ・イデオロギー」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が活発にだされており、国民国家の欺瞞性の理論的顕在化が著しく進んでいる。

一方で、グローバル化した社会に対応するイデオロギーとして「多文化主義」・「多文化共生」が地域、国家のマジョリティによって語られている。西川長夫によれば、「多文化主義」とは強制的な「同化主義」に対抗して、社会的、経済的、文化的、言語的不平等を一見なくすための国民統合あるいは社会的統合イデオロギーとされる。この心地よいイデオロギーは、マジョリティとマイノリティの非対称性を隠蔽＝固定化する機能をえてして果たす。そのことは、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社会で確認できよう。「ハイブリッド状況」(ネグリ)を統制する揺らぐ国民国家にとって、今後必要不可欠なイデオロギーである。

本原稿の「まとめ」を書いているさなか、鳩山民政党政権の「高校の実質無償化」政策から、日本国内に10校ある朝鮮高級学校をはずすべきだという声が、閣内の中井「拉致問題」担当大臣からあがった。「北朝鮮に経済制裁を行っていることを十分に考慮すべきだ」という発言である(「朝日新聞」2月26日朝刊)。

朝鮮学校は学校教育法にあるいわゆる「一条校」ではなく、各種学校である。他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同様、文部科学省が国会審議を踏まえて省令で無償化の対象にするかをきめる方向性でいた。それに横槍を入れる形で上記の反対が閣内からだされ、首相は「国交のない国だから、どうい教科内容かも調べようがない。同じように扱うことが望ましいかどうかという議論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結論はまだ決めていないが、常識的には、日本人と国交のある国の方々が優先されることは、それほど無理のない話ではないか」という驚くべきコメントを記者の質問に対して述べている(「朝日新聞」2月27日朝刊)。

この問題は、「多様な属性を持つ子ども」の学習権に対して、国家がどのように線引きをするのかという論点が基本である。すなわち「多文化共生」の本質が問われているのである。その問題を持ちつつも、朝鮮半島と「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強烈なレイシズムをまずは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無関心からくる無知なのか意図的な排除(こちらが主)なのかは議論の幅があるようには思えるが、ともにレイシズムという点では共通する。

本稿でカリキュラムを紹介しているように、朝鮮学校のカリキュラムは容易に確認できる問題であり、いまだ視察に行き始めてわかる問題でもない。(教科書は閲覧可能だが、持ち出し、コピーは禁止である。)教育内容は朝鮮民主主義共和国を想定したものではなく、日本社会に定住しながら、朝鮮半島の言語・文化・アイデンティティを大切にしていこ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の議論では、朝鮮民主主義共和国と日本に定住する「在日コリアン」社会を混乱して捉えている。「朝日新聞」2月27日版で高龍秀(甲南大学)がくしくも指摘しているように、朝鮮学校が朝鮮民主主義共和国からの支援を受けていることは事実であっても、在校生の国籍の半数以上は韓国籍である。さらに朝鮮籍がそのまま朝鮮民主主義共和国の公民ではない。あまりにも基本的な問題であり、政府レベルでは「無知」とは考えにくい。高級学校からの大学進学率は既に8割にのぼり、私立のみならず国立大学の多くは朝鮮学校の卒業生に対して受験資格を認めている現状で、あえて授業料無償化の対象からはずす議論を「閣内不一致」という形で展開する現政権の体質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

以上のような、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揺らぐ国民国家の「国民」統合の政策は、現在多様かつ積極的な動きがみられる。フランスに見られるような「国民」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編・強化の戦略、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に見られる「多文化主義」戦略もその動向の一端にすぎない。本稿第1・2章でみた日本の現状は古典的な「伝統・文化」の強調による「同化」の強化(「帰化」の簡易化の方向性が典型)と排除の露骨な存続という特徴がある。そのあり方を本稿では教育政策と実態で確認してきた。鳩山民政党政権がどこまで特別永住者の地方参政権にとりくむ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著者は本文でも指摘したが懐疑的である。第3章でみた「教員の質の保証」問題は上記のような教育政策、実態に疑問を持たせることなく、教育技術の向上に専念できる教員の再教育、養成、さらに不適用者の教育現場からの排除が一つの機能として貫かれている。

(謝辞：韓国での講演、講義さらには本稿作成に当たり翻訳、図表の作成に、田武尚さん、金ボラムさん、金善恵さん、後藤裕亮さん、大谷直史さん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